정보화사업 관리지침

제정 2022. 12. 23. 개정 2023. 6. 1.

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「전자정부법」 및 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업무 관리규정」에서 규정한 사항과 관련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(이하 "진흥원"이라 한다)의 정보화사업 추진 시 추진체계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1. "정보화"란 정보를 수집·생산하고 체계적으로 가공·축적하여 이를 유통 또는 활용함으로서 진흥원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.
 - 2. "정보화사업"이란 정보화를 통한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 및 대민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.
 - 가. 정보화전략계획의 수립
 - 나. 정보시스템의 도입·구축
 - 다. 응용업무소프트웨어의 개발
 - 라. 데이터베이스의 구축
 - 마. 정보시스템의 운용을 위한 환경의 구축
 - 바.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
 - 사. 정보통신망 시설의 구축 및 운영
 - 아. 개인용 컴퓨터 및 주변장비의 도입·운영
 - 자. 정보자원으로 분류될 수 있는 장비의 도입 및 개발
 - 차. 그 밖에 정보화의 이행에 관한 사항
 - 3. "정보시스템"이란 정보의 수집, 가공, 저장, 검색, 송신, 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.
 - 4. "정보자원"이란 정보시스템 구성에 필요한 인적자원, 서버·통신장비 등 하드웨어 자원, 응용프로 그램·데이터베이스 자료 등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자원을 말한다.
 - 5. "사업부서"란 정보화사업을 주관하는 부서로서 예산과 인력 등을 투입하여 사업을 기획, 관리,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.
 - 6. "총괄부서"란 정보화사업의 중복 방지, 관련 법·제도 준수 등을 위하여 감독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.
 - 7. "용역업체"란 진흥원의 용역사업을 위임 또는 위탁받아 책임지고 수행하는 기관, 법인, 단체를 말한다.
 - 8. "제안요청서"란 정보화사업의 사업비, 사업 범위 및 내용, 성과목표, 요구사항, 입찰참가 자격·

조건 등을 담은 문서를 말한다.

- 9. "사전협의"란 정보화사업의 중복성, 상호연계, 공동이용 등과 관련하여 사업발주 전 검토·협의하는 업무를 말한다.
- 10. "협의기관"이란 「전자정부법 시행령」제83조에 따라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사전협의 권한이 부여된 행정안전부를 말한다.
- 11. "사업관리"란 정보화사업의 계획 수립 및 계약, 진도관리, 산출물관리, 품질·위험관리, 감리, 검수, 결과보고, 정산, 결과의 대외표시 등의 일련의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.
- 12. "범정부EA포털(GEAP, Government Enterprise Architecture Portal)"이란 「전자정부법」제47조 제3항 및 제42조1항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자원을 공동으로 등록·관리·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·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하다.

제3조(적용범위) 이 지침은 진흥원에서 시행하는 모든 정보화사업에 적용한다.

제4조(기본원칙) 정보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- 1. 정보시스템에 적용되는 기술은 표준화된 개방형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비표준의 폐쇄형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.
- 2. 데이터의 무결성, 일치성, 기밀성, 가용성 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.
- 3. 진흥원이 보유한 정보자원 중 여러 행정기관,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정보자원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.
- 4. 내부행정 처리나 의사결정을 신속히 하여 사업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.

제5조(부서역할) ① 총괄부서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정보화사업 관리 대상 선정·공지
- 2. 제안요청서, 산출물 등의 검토·관리
- 3. 사전협의 제도 준수 감독·관리
- 4. 범정부EA포털 관리 지원 및 교육
- 5. 사후관리 감독·지원
- 6. 그 밖에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총괄부서가 지원할 필요가 있는 업무
- ② 사업부서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정보화사업 계획의 수립
- 2.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작성
- 3. 사전협의 제도 준수 및 결과 이행
- 4. 정보화사업 사업관리
- 5. 사업결과의 보급 확대
- 6. 용역업체의 관리·감독
 - 가. 사업추진에 따른 계약의 이행
 - 나. 용역업체 보안관리·감독

- 7. 정보자원의 운영 및 관리
- 8.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관리, 웹사이트 총량제 준수 등 사후관리
- 9. 그 밖에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사업부서가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

제2장 정보화사업 계획 수립

- 제6조(정보화 계획 수립) ① 진흥원은 정보화사업의 현황파악 및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해 연간정보화계획을 수립해야 한다.
 - ②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초 정보화사업 수요조사를 시행하고, 연내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부서는 수요조사 기간 내에 정보화사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7조(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작성) ① 사업부서(통합사업은 발주부서)의 장은 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서,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자료를 작성해야 한다.
 - ② 제안요청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 또는 준수하여야 한다.
 - 1.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「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 지침」제16조(제안요청 서 작성)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(부록1)
 - 2.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이 공표한 「공공 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및 지원 가이드」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(부록2)
 - 3. 진흥원의「정보보안기본지침」제14조(제안요청서 기재사항)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(부록3)
 - 4. 행정안전부 및 진흥원에서 공표한 「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」 준수에 관한 사항
 - 5. 진흥원의 「공공데이터 관리지침」 제3장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준수에 관한 사항
 - 6. 그 밖에 필요한 사항
- 제8조(클라우드 도입 우선 검토) ① 사업부서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「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」제4조(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우선 검토)에 따라 정보화사업 추진 간 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하거나 운영·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교체할 때에는 보안성, 안정성, 확장성 및 비용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.
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정보시스템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고시한「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」제7조2항에 따라 통합대상에서 제외한다.
 - 1.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 장소에 설치·운영하도록 규정된 정보시스템
 - 2. 원자력, 상수도, 가스 등 시설제어와 관련한 정보시스템
 - 3. 센서, CCTV 등 현장자료를 실시간으로 수집·전송하는 정보시스템
 - 4. 기관 내부운영을 위한 보안·통신, 보안관제 등 현장설치가 필요한 정보시스템
 - 5. 출입통제, 현장장비 제어 등 통신 성능 및 안정성의 사유로 현장에 위치해야 하는 정보시스템
 - 6. 슈퍼컴퓨터 등 정보시스템의 특성상 통합이 불가능한 정보시스템

7.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보시스템의 통합이 곤란하다고 인정한 정보시스템

제3장 정보화사업 계획 검토

- 제9조(보안성 검토) 사업부서의 장은 진흥원의 「정보보안기본지침」 제2장제2절(보안성 검토)에 따라 사업 공고 전 보안성 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.
- 제10조(사전협의)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추진 시 「전자정부법」제67조(사전협의)에 따라해당 사업에 대한 중복투자 방지, 상호연계 및 공동이용 강화를 위하여 사전협의 제도를 준수하여야 한다.
 - ②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추진 시 해당 사업의 사전협의 대상사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한다. 이때, 「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」 제4조(대상사업)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.
 - 1. 행정업무의 효율화와 대국민서비스의 개선 등 공공부문의 업무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
 - 2. 여러 부처 연계 및 정보의 공동활용 등을 통해 정보화의 효과를 극대화하거나 공통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정보자원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
 - 3.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업무를 출연,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기관의 전자정부사업<개정 2023. 6. 1.>
 - 4. 그 밖에 사업의 목적,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성과관리가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
 - 5. 지역정보화사업
 - ③ 제2항에 따른 대상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은 제외한다.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 해당 연도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은 사전협의 대상으로 간주한다.<개정 2023. 6. 1.>
 - 1. 사업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계속사업
 - 2. 정보시스템의 기능 추가를 하지 아니하는 유지관리·운영, 노후장비의 교체(다만, 클라우드컴퓨팅 환경 전환 사업은 제외한다), 상용 소프트웨어·하드웨어 구매·임대·설치, 회선 증설·추가등의 통신 기반 구축사업, 콘텐츠 제작 사업, 신규 DB구축 사업<개정 2023. 6. 1.>
 - 3. 「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」 또는 「장애인·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」에 따른 전자정부 서비스의 호환성 확보, 장애인·고령자 등의 접근성 향상 등 웹사이트 품질수준 제고를 위한 소프트웨어의 보완개발 사업
 - 4.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시스템 보안 강화를 위한 사업
 - 5. 출연금, 보조금 등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받은 수입액을 사용하지 않는 공공기관 정보화사업
 - 6. 별도의 비용 없이 기관 자체 인력을 활용하여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하는 사업 또는 외부 사업자의 서비스를 임대 활용하는 경우(이때, 업무처리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 또는 구매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)
 - 7. 외교·국방·통일·안보 등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사업<개정 2023. 6. 1.>
 - 8. 정보통신기기의 보급, 민관협력을 위한 자본적 지원 등 민간에 대한 정보화 지원 사업

- 9. 정보격차해소, 국제협력 사업
- ④ 사업부서의 장은 사전협의에 필요한 서식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사전협의를 의뢰하여야 한다. 총괄부서의 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후 사전협의 대상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필요시 상급부처를 통해 협의기관의 장에게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.
- 1. 사전협의 신청서 [별지 제1호 서식]
- 2. 사업계획서
- 3. 제안요청서 또는 과업지시서
- 4. 사업비 산출내역서
- 5. 자체검토결과서 [별지 제2호 서식]
- 6.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[별지 제3호 서식]
- 7. <삭제 2023. 6. 1.>
- 8. 법제도 준수사항 체크리스트 [별지 제5호 서식]
- ⑤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을 발주하기 최소 30일 이전에 제4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정보화전략계획(Information Strategic Planning, 이하 ISP) 사업의 경우 사전협의 신청과 동시에 사업을 발주할 수 있다.
- ⑥ 총괄부서의 장은 협의기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사전협의 결과를 사업부서의 장에게 전달하여야 하며, 사업에 반영되도록 이행여부를 지도·점검하여야 한다.
- ⑦ 사업부서의 장은 사전협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협의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, 이후 결과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제4장 정보화사업 수행

- 제11조(정보화사업의 수행)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의 계획수립, 발주,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, 사업관리, 감리, 검사 및 운영 등 사업 진행의 모든 단계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 「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 지침」을 준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 - ② 정보화사업의 입찰참가자격, 기술평가, 계약체결, 대가지급 등 계약업무에 관한 절차 및 주요 사항은 기획재정부 「(계약예규) 용역계약일반조건」에 따른다.
 - ③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수행 간 용역업체 보안 관리를 위해 진흥원의 「정보보안기본지침」을 준수한다.
- 제12조(사전협의 이행실태의 점검) ① 총괄부서의 장은 사전협의 미이행, 사전협의 신청 미등록, 사전협의 검토결과의 미반영, 사업산출물의 사전협의시스템 미등록 등에 대하여 사업부서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사업부서의 장은 이를 반영하고 이행결과를 범정부EA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. ②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이 종료된 때 지체 없이 제10조제6항에 따른 검토결과(이의 제기를 한 때에는 제10조제7항에 따른 재검토결과를 말한다)를 반영한 사업의 결과를 범정부EA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.

제5장 운영 및 정보자원 관리

- **제13조(정보자원 관리대상)** 정보자원 관리대상의 적용범위는 정보화사업으로 구축된 정보시스템 및 정보화사업으로 단순 도입된 모든 정보자원을 포함한다.
- 제14조(관리담당자 지정·운영)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각 정보시스템 별 관리담당자를 지정·운영하여야 하며, 담당자 변경 시 원활한 인수인계를 통해업무 연속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15조(정보시스템 운영관리) ① 사업부서의 장은 구축 완료된 정보시스템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·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②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서버, 통신장비 등 중요한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고, 장애예방, 성능 및 용량관리 등 사전활동을 통해 항상 정상가동되도록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
 - ③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자원 도입·개발·운영 시 정보시스템 간 상호운용성 증대 및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「전자정부법」에 따른 표준화에 노력하여야 하며,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 시 표준화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.
 - ④ 사업부서의 장은 보유·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을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.
 - ⑤ 사업부서의 장은 진흥원의 「공공데이터 관리지침」제3장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준수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 보유·운영 중인 정보시스템 데이터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하다.
- **제16조(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)** ①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초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 대상과 기준을 선정하여 각 사업부서에 안내하여야 한다.
 - ②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 및 모바일 서비스의 운영효율 증대를 위하여「전자정부 성과관리지침」및「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」에 따라 운영성과를 측정하고, 그 결과 및 증빙자료를 범정부EA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.
 - ③ 총괄부서의 장은 범정부EA포털에 등록된 운영성과 측정 결과 및 증빙자료를 확인하고, 추가 등록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사업부서의 장에게 수정·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.
 - ④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 결과에 따라 조치해야할 사항에 대하여 차기 정보화 사업 추진 시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.

부 칙<2022. 12. 23.>

이 지침은 경영기획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23. 6. 1.>

이 지침은 경영기획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신청서

사업명	※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사업명과 동일하게 작성				
사업비	市	천원	SW개발비	巾	천원
사전협의 신청 사유 * 복수 √ 可	□ 광역시도 □ 시군구 시 □ 정보시스 □ ISP 등의 □ 신규 웹시	등 사업비 1억 ት업비 5천만 원 템 구축을 목적 결과에 따른 7 ት이트·모바일앱		사업	

붙임 1. 사업계획서

- 2. 제안요청서 또는 과업지시서
- 3. 자체검토결과서
- 4.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

기 관 명

	직위	성명	전화번호	e-메일
소속				

【 별지 제2호 서식 】

사전협의 신청사업 자체검토결과서

□ 사업 개년	□ 사업 개요					
사업명						
신청기관(부서)						
사전협의 사유						
사 업 비		(단위 : 천	원) 사업기간			
사업범위						
□ 사업 대선	상 시스템					
정보	시스템명	개발년도	접속URL		비고	
□ 검토결괴	요약					

□ 분야별 검토결과

검토분야	구 분	검토결과	주요 내용
	① 기관 내 또는 타 기관의 유사시스템 (사업)과 중복 여부를 확인하였는가? *「전자정부 성과관리 업무매뉴얼」참고	□ 예 □ 해당없음	
	② 기관 내 또는 타 기관의 유사시스템 (사업)과 연계·통합 가능성을 검토하 였는가? *「전자정부 성과관리 업무매뉴얼」참고	□ 예□ 해당없음	
	③-1 타 기관 시스템과 연계 시, 행정정보 공동이용 센터를 통한 연계를 검토 하였는가? * 「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」참고	□ 예 □ 해당없음	(작성예시) · 타 기관과 정보 연계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용하여 연계할 경우 "예"를 체크 ·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용하지 않고 직접 타 기관과 정보 연계 시 "해당없음" 체크하고 사유 기재
① 유사·중복 및 연계·통합	③-2 연계대상 정보시스템, 정보 및 방법에 대해 명확히 기술하였는가?	□ 예□ 해당없음	(작성예시) · 연계 과업이 있는 경우 "예"를 체크하고 연계 대상 기관명 및 시스템명과 연계 방식(API/ ESB/DB링크/EAI 등)이 기술된 제안요청서 페이지 기재 · 연계 과업이 없는 경우 "해당없음" 체크
간세:중합	④-1 데이터 관련 과업이 있는 경우, '혜안' 등 기 개발된 공통기반 플랫폼 및 행안부 '공공빅데이터분석참조모델' 활용 여부를 검토하였는가? *「공공 빅데이터 업무적용 가이드」참고	□ 예 □ 해당없음	
	④-2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하는 「범정부데이터 분석시스템*」의 분석자원 활용 여부를 검토하였는가? * 중앙·지자체·공공기관이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별도 구축하지 않고 고성능 분석자원을 공동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(22년부터 단계적 구축)	□ 예 □ 해당없음	
	⑤ 「공공데이터 관리지침」에 따라 민간 서비스 와의 중복·유사 여부를 검토 하였는가?	□ 예 □ 해당없음	
	⑥ 웹사이트 관련 과업이 있을 경우,「전 및「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는가? ※ '[참고1] 웹사이트 총량관리 관련 Q&A'를	ᅦ 구축·운영 제	지침」제14조의2에 따른 총량을 준수
② 웹사이트 · 모바일	⑥-1 웹사이트 관련 과업이 있을 경우, 「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」 및「장애인·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」를 준 수하였는가?	□ 예 □ 해당없음	(작성예시) · 해당 지침 준수를 명시한 페이지 또는 요구 사항 번호기재 * 웹사이트 구축/개선 시 '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'을 준수하여 웹 접근성, 호 환성, 사용성 등 웹사이트의 품질기준을 충족하도록 구축/개선 추진 * 관련 가이드: 행정·공공기관 웹사이트 구 축·운영 가이드, 전자정부 웹사이트 UI·UX 가이드라인
	⑥-2 신규 웹사이트 개설 과업이 있고, 「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 템 구축·운영 지침」 제14조의2에 따라 웹사이트 총량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였는가?	□ 예 □ 해당없음	· 개설되는 웹사이트가 서비스되는 망 구분 □ 인터넷 □ 내부망 * 해당하는 망에 체크(양쪽 모두 서비스할 경우 둘다 체크) (아래는 웹사이트 신설 유무에 따라 작성) ① 웹사이트 신설 과업이 있을 경우 · "예"에 체크하고, 총량 준수를 위해 웹사이트 개설방법을 명시한 요구사항 번호기재 · 웹사이트 총량이 증가하지 않도록 구체적인

검토분야	구 분	검토결과	주요 내용
			구현방법이 명시되어야 함 * 총량예외 기준에 해당하는지, 예외가 아닌 경우는 기존 운영중인 기준 웹사이트의 하위디렉터리로 구성하는지 등 개설하는 웹사이트의 URL을 명시(예정 포함) ② 웹사이트 신설이 없는 경우 · "해당없음"에 체크하고 기존 웹사이트(url) 기능개선 등 해당내용 작성
	⑥-3 웹사이트의 이용자가 대국민인가?	□ 예 □ 해당없음	(작성예시) · 구축/개선 대상 웹사이트의 이용자에 대국 민이 포함되는 경우 "예"를 체크 · 특정업무 처리를 위해 제한된 사용자*만 접근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, 대국민의 이용이 없는 사이트인 경우 "해당없음"을 체크하고 이용자가 누구인지 대상을 구체 적으로 기술 * 내부직원 등 별도 승인된 이용자 * 누구나 회원가입-로그인할 수 있다면, 대민 이용 가능한 것임
	⑦ 모바일 서비스(앱 및 웹)는 「모바일 ³ 을 수립하였는가?	선사성부 서비	스 관리 시짐」을 순수하여 사업계획
	⑦-1 대국민 모바일 앱(공공앱) 개발 필 요성을 지침 제18조 제2항에 근거하 여 검토하였는가?	□ 예 □ 해당없음	(작성예시) · 대국민 모바일 앱 개발인 경우 "예"를 체크하고 지침 제18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필요성을 검토한 내용 기술 · 그 외 모바일 서비스 개발이 있는 경우에는 "해당없음"을 체크하고, 모바일 서비스 유형을 기술(대국민 모바일 웹/대국민 모바일 반응형 웹/업무용앱(사용대상명시)/업무용 모바일 웹(사용대상명시)/업무용 반응형 웹)
	⑦-2 「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 침」을 준수하였는가?	□ 예 □ 해당없음	│(작성예시) │·해당 지침 준수를 명시한 페이지 또는 요 │ 구사항 번호기재
	⑧-1「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	합기준」를 준속	수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는가?
	®-1-1. 정보자원 통합 구축·관리 대상인가?	□ 예 □ 해당없음	
	⑧-1-2. 정보자원을 통합구축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는가?	□ 예 □ 해당없음	
	8-1-3-1. 통합관리기관(국가정보자원관리원) 입주 대상인가?	□ 예 □ 해당없음	
③ 정보자원 통합 및	⑧-1-3-2. 통합관리기관(국가정보자원관리원) 입주 대상으로써, 신규·차세대 사업을 추진할 경우, G-클라 우드 설계기준에 따라, 클라우 드로 구축하는 것을 국가정보 자원관리원과 협의하였는가?	□ 예 □ 해당없음	
클라우드	®-2「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전 고시」를 준수하여 사업계획을 수립적		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
	8-2-1. 정보자원의 신규 도입, 노후 교체 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을 우선 검토하였는가? ※ 사업계획서 등에 부서장 등의 승 인을 받은 검토 결과 포함 여부	□ 예 □ 해당없음	
	⑧-2-2. 보안인증(CSAP)을 받은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가?	□ 예□ 해당없음	
	⑧-2-3.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	□ 예	

검토분야	구 분	검토결과	주요 내용
	사업인 경우 이용기준 고시 제7조에 따라 적정하게 검토(국정원 보안 지침 준수, 보안인증제품 고려 또는 국정원 협의 등)하였는가?	□ 해당없음	
	(9) 「공공데이터법」 및「데이터기반행정본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고 ※ '[참고2] 데이터 품질분야 세부 점검 내용' (9-1 데이터 표준화 및 상위표준 준수 · 데이터 표준 코드, 용어, 단어, 도메인 등 데이터 표준화 사항 반영 여부 · 범정부 및 기관 데이터 표준 적용준수 여부 (9-2 데이터 표준 관리	마업내용을 제(을 참조하여 아 □ 예 □ 해당없음	안요청서에 반영하였는가?
	· 데이터 표준 관리방안 반영 여부 데이터 표준 변경이력 관리방안 반영 여부	□ 예 □ 해당없음	
	 ⑨-3 데이터 구조 설계 · 데이터 구조 설계(모델링) 시 준수해야할 기준 및 규칙, 고려사항 등 반영 여부 · 데이터 구조(논리·물리) 설계를 위한주제영역, 개념모델, 논리모델 관련사항 반영 여부 	□ 예 □ 해당없음	
	 ⑨-4 데이터 구조 검증 업무 요구사항의 모델 반영과 데이터 구조 정규화 수행 및 검증 계획 반영 여부 데이터 모델링 과정 및 구조 적정성 검증 검증 에대한 활동 사항 반영 여부 	□ 예 □ 해당없음	
4 DB	⑨-5 데이터 구조 관리방안· 데이터 구조 관리방안 반영 여부·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 관리방안 반영 여부	□ 예 □ 해당없음	
	⑨-6 데이터 값 검증· 데이터(연계데이터 포함) 값 검증 계획 반영 여부· 데이터 값 검증 수행 및 검증 결과에 따른 개선활동 반영 여부	□ 예 □ 해당없음	
	 ⑨-7 이관 데이터 값 검증 · 데이터 이관 계획(일정 및 수행방법론등) 반영 여부 · 이관 데이터 값 검증 수행 및 검증결과에 따른 개선활동 반영 여부 	□ 예 □ 해당없음	
	⑨-8 데이터 품질 관리체계·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정책, 절차, 조직(담당자) 관련 사항 반영 여부·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필수산출물 등 관련 사항 반영 여부	□ 예 □ 해당없음	
	 ⑨-9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· 개방 예정 데이터 목록 등 기관의 공 공데이터 개방계획과 본 사업의 연관성 관련사항 반영 여부 · 공공데이터베이스의 메타데이터 등록, 관리 및 현행화 관련사항 반영 여부 	□ 예 □ 해당없음	
⑤ 사전협의 제도준수	⑩ 범정부EA포털(사전협의시스템)에 사전 협의 신청내역을 등록하고 자체검토 결과를 입력하였는가?	□ 예 □ 해당없음	

검토분야	구 분	검토결과	주요 내용
⑤ 요구사항 상세화	① 「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」의 'SW사업 상세 요구사 항 세부내용 작성표' 등을 참조하여 요구사항을 상세하게 작성하였는가?	□ 예□ 해당없음	
기 적정 사업기간 산정	② 전문위원회를 통해 산정한 '적정 사업 기간 종합 산정서'를 첨부하였는가?	□ 예□ 해당없음	
공공 데이터 개방 (과기정통부)	공공데이터법의 기본원칙 및 제공대상 범위(제17조)에 따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포함하고 있는가?	□ 예 □ 해당없음	 ※ "예" 선택 시 · (작성사례) 제안요청서 p.00, 요구사항 DAR-00 등 ※ "아니오" 선택 시 (미개방) 사유 선택 □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비공개대상 □ 저작권법 및 제3자 권리 포함 □ 행정지원, 인프라 관리용 □ 기타(기개방)
	개인정보 포함된 데이터에 대한 개방 시 개인정보보호법 및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 등을 준수하여 비식별화 방안을 수립하였는가?	□ 예 □ 해당없음	· (작성사례) 제안요청서 p.00, 요구 사항 DAR-00 등

[※] 제안요청서에 기재하는 지침, 가이드 등의 규정은 반드시 현행화하여 기재

□ 대내외 지적사항 및 조치 내역

지적사항	조치 내역

[※] 중복.연계 등과 관련한 정보화추진 심의위원회, 국가정보화시행계획, 국회, 감사원 등 지적사항 및 조치 내역

□ 예비검토 의견 반영

예비검토 의견유무	행정안전부 예비검토의견	기관의 반영계획 회신	반영결과

[※]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6조(사전협의를 위한 사업목적 등의 예비검토) 내용 기재

【 별지 제3호 서식 】

< SW개빌	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>	
사업명		
	항목별 검토 의견	
검토항목	검토의견	추정 사업기간
① 기능점수(FP) 기반 SW사업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		개월
② 사업기초자료 (사업계획서, 예산신청서, 제안요청서)		개월
③ 유사사업 자료		개월
④ 기타 특이사항		개월
	종합 의견	
⑤ 종합의견		적정 사업기간 개월
「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업기간을 위와 같이 산정합니	관한 일반기준」제6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다. 년 월	
위 원	(서명) 위 원	(서명)
위 원	(서명) 위 원	(서명)
위 원	(서명) 위 원	(서명)
	위원장	(서명)
발주기관의 장 귀하		

- ※ SW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검토항목을 수정할 수 있음
- ※ 위원 성명 및 서명은 비식별 처리 가능
- ※ SW개발 사업만 작성 (ISP 사업은 제외)

【 별지 제**4호 서식** 】 <삭제 2023. 6. 1.>

【 별지 제5호 서식 】

공공SW사업 법제도 준수사항 체크리스트

No	관리·감독 항목	법적근거	판단기준	이행여부
1	과업심의위원회	 법 제50조 시행령 제45조, 제46조, 제47조 SW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4조, 제24조의, 제25조, 제26조, 제27조, 제28조 	·(과업내용 확정 심의) 과업 확정을 위한 과업심의 개최 명시 여부 ·(과업내용 변경) 과업변경 요청 가능 명시 여부	□ 예 (RFP 00페이지) □ 아니오 (사유:)
2	상용SW 직접구매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(BMT)	 법 제54조 제2항, 제55조 시행령 제50조, 제51조 SW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, 제8조, 제9조 SW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4항 및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 규정 제6조의2 	· 총사업규모가 3억원 이상인 SW 사업에서 상용SW 도입이 있는 경우 · 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제품 또는 5천만원 이상이며 소프트웨어품질 인증(GS)·CC·NET·NEP 등 국가 인증을 획득한 5종의 제품 · 상용SW 도입대상 품목의 첨부 여부 · 상용SW 직접구매 제외 품목에 대한 상위기관 사전검토 여부(전체 품목대비 50%이상인 경우) 및 제외사유의 적절성 여부 · 직접구매 대상 상용SW를 경쟁 입찰(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제품 예외)로 구매하는 경우 BMT 실시 및 결과 반영 명시 여부	□ 예 (RFP 00페이지) □ 아니오 (사유:)
3	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	· 법 제48조 ·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	· 사업금액에 따른 대기업참여하한 적용 및 입찰참가자격 명시여부 · 상출제기업 참여제한 명시여부 · 2개 이상의 다른 사업을 통합하여 일괄 입찰하는 경우 낮은 사업 예산으로 적용여부 · 장기계속계약인 유지보수사업의 경우 총사업금액의 연차별 평균금액 으로 참여제한 적용여부	□ 예 (RFP 00페이지) □ 아니오 (사유:)

No	관리·감독 항목	법적근거	판단기준	이행여부
4	하도급 제한	・법 제51조 ・시행령 제48조 ・SW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9조, 제20조, 제21조, 제22조, 제23조	·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계약 상대자가 반드시 발주기관 사전 승인을 받도록 명시여부 · 하도급 비율(50%초과) 제한 및 다시 하도급 원칙적 금지 명시여부 ·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여부(가감조정된 경우 가감 조정된 기준) ·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제출 명시여부 · 하도급 비율 10%초과 시 공동 수급체 구성 명시여부	□ 예 (RFP 00페이지) □ 아니오 (사유:)
5	SW사업 작업장소 (원격개발)	 · 법 제49조 제3항 · SW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4조 · (계약예규) 용역계약일반 조건 제52조 ·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· 운영 지침 제41조 	· SW사업수행을 위한 작업장소 협의 결정 명시 여부 · 작업장소비용의 사업예산 계상여부 · 작업장소에 관한 보안요건 명시여부 및 계약상대자에 의한 작업장소 제시와 우선검토 절차 명시 여부	□ 예 (RFP 00페이지) □ 아니오 (사유:)
6	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	 국유재산법 제65조의12 법 제59조, 시행령 제54조 SW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32조 (계약예규)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정보시스템 구축・운영지침 제60조 	·지식재산권 공동소유 원칙 명시여부 ·국방·국가안보 등 이유로 발주기관 가속 시 그 사유를 명사하였는지 여부 ·누출금지정보 등 보안관련 사항 및 계약목적물의 반출 절차 등의 명시 여부	□ 예 (RFP 00페이지) □ 아니오 (사유:)
7	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	·국유재산법 제65조의12 ·(계약예규)용역계약일반 조건 제56조	·개발SW가 타 기관에 공동활용 되는지 사전에 안내하고, 공동활용 시 타 기관을 명시하였는지 여부	□ 예 (RFP 00페이지) □ 아니오 (사유:)
8	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	・법 제60조 ・(계약예규) 용역계약일반 조건 제58조	· 검수후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부터 1년 이내로 하자담보 책임기간 명시여부 · 적법한 하자담보책임의 범위내 명시여부 (범위를 넘은 사항은 유지관리에 해당) · 하자보수와 혼용하여 '무상유지보수 사용여부 ·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유지 보수 사항(범위내)을 하자보수로 명시하는지 여부	□ 예 (RFP 00페이지) □ 아니오 (사유:)
9	특정규격 명시 금지	・(계약예규)정부입찰・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4항제5호	·특정상표 또는 모델·규격 등 명시여부	□ 예 (RFP 00페이지) □ 아니오 (사유:)

No	관리·감독 항목	법적근거	판단기준	이행여부
10	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(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 적용)	 · 법 제49조 제1항 · 시행령 제44조 제1항 ·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, 제43조의3 ·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, 제44조2 · (계약예규)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· (계약예규)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	·SW사업에 대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 채택 여부 ·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체결방식 채택 여부	□ 예 (RFP 00페이지) □ 아니오 (사유:)
11	기술능력 평가비중(90%) 도입	· (계약예규)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7조 ·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 지침 제18조	· 협상방식 적용사업에서 기술능력 대 가격점수 비중을 90:10로 제시여부	□ 예 (RFP 00페이지) □ 아니오 (사유:)
12	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	・법 제49조 제2항 ・SW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	·기술능력평가 시 평가기준을 SW기술성평가기준을 적용· 활용하였는지 여부 ·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를 30점 이하로 준수하였는지 여부 ·차등점수제 도입 시 입찰공고문, 제안요청서에 명시 여부	□ 예 (RFP 00페이지) □ 아니오 (사유:)
13	SW사업 제안서 보상	 법 제52조 SW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3조, 제16조, 제17조 	· 20억원 이상의 SW 개발사업에서 제안서보상에 대한 명시 여부	□ 예 (RFP 00페이지) □ 아니오 (사유:)
14	요구사항 상세화	· 법 제44조 ·SW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1조	·SW사업의 상세요구사항 작성표 사용여부	□ 예 (RFP 00페이지) □ 아니오 (사유:)
15	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	· 법 제45조 ·SW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	· SW개발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 적정사업기간 산정기준에 따른 사업 명시 및 종합 산정서 첨부 여부	□ 예 (RFP 00페이지) □ 아니오 (사유:)
16	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	·SW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1조 제3항, 제18조 제3항	·SW개발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 제안요청서 내 투입인력 관련 사항 명시 불가능	□ 예 (RFP 00페이지) □ 아니오 (사유:)
17	SW사업 영향평가	 법 제43조 시행령 제35조, 제36조, 제37조 SW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, 제6조 	·SW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첨부 여부	□ 예 (RFP 00페이지) □ 아니오 (사유:)
18	SW사업정보 제출	· 법 제46조	·SW개발·재개발·유지보수 및 운영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 제안요청서 내 SW사업정보 제출 명시 여부	□ 예 (RFP 00페이지) □ 아니오 (사유:)

【부록 1】

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

제16조(제안요청서 작성)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채결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- ② 제안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.
- 1. 과업내용, 요구사항
- 2. 계약조건
- 3. 평가요소, 평가방법
- 4. 제안서의 규격·제출방법·제본형태
- 5. 제안서 보상에 관한 사항
- 6. 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
 - 가. 제19조에 따른 하도급 대금지급 등
 - 나.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「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」 제 19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및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 기준
 - 다.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술적용계획표
 - 라. 제50조 내지 제53조에 따른 "소프트웨어 개발보안" 적용
 - 마. 제20조에 따른 사업관리자의 제안서 발표 의무화
 - 바. 제44조에 따른 표준산출물 작성 및 제출
 - 사. 사업수행 관련 협력사(하드웨어 또는 상용SW 납품업체 등)에 대한 대금의 지급 시기 등
- 7.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「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」 제10조에 따른 적정사업기간 산정에 관한 사항
- 8. 「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」 제47조제6항에 따라 사업자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 등 과업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
- 9. 「소프트웨어 진흥법」 제49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유지·관리를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할 때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사업수행 장소를 제안 가능함을 명시(정보 보안에 관한 사항 등 사업수행 장소에 대한 요건 제시 가능)
- 10. 그 밖에 필요한 사항

공공 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및 지원 가이드

■ 점검항목 대상제도별 법적근거 및 판단기준

		_	소프트웨어 진흥법 소관 타법 소관
No	대상제도	★ 법적 근거	포르트웨이 전등법 도판 판단기준
*1	과업심의위원회	 법 제50조 시행령 제45조, 제46조, 제47조 SWA업 계약 및 관리목에 관한 지침 제24조, 제24조의2, 제25조, 제26조, 제27조, 제28조 	· (과업내용 확정 심의) 과업 확정을 위한 과업심의 개최 명시 여부 · (과업내용 변경) 과업변경 요청 가능 명시 여부
*2	상용SW 직접구매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(BMT)	· 법제54조 제2항, 제55조 · 시행령 제50조, 제51조 · SW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, 제8조 제9조 · SW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 ·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4항 및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6조의2	· 총사업규모가 3억원 이상인 SW사업에서 상용SW 도입이 있는 경우 · 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제품 또는 5천만원 이상이며 소프트웨어품질인증(GS)·CC·NE T·NEP 등 국가인증을 획득한 5종의 제품 · 상용SW 도입대상 품목의 첨부 여부 · 상용SW 직접구매 제외 품목에 대한 상위기관 사전검토 여부(전체품목대비 50%이상인 경우) 및 제외사유의 적절성 여부 · 직접구매 대상 상용SW를 경쟁입찰(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제품 예외)로 구매하는 경우 BMT 실시 및 결과 반영 명시 여부
* 3	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	· 법 제48조 ·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	· 사업금액에 따른 대기업참여하한 적용 및 입찰참가자격 명시여부 · 상출제기업 참여제한 명시여부 · 2개 이상의 다른 사업을 통합하여 일괄 입찰하는 경우 낮은 사업예산으로 적용여부 · 장기계속계약인 유지보수사업의 경우 총사업 금액의 연차별 평균금액으로 참여제한 적용여부
*4	하도급 제한	 법 제51조, 시행령 제48조 SW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9조, 제20조, 제21조, 제22조, 제23조 	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반드시 발주기관 사전승인을 받도록 명시여부 하도급 비율(50%초과) 제한 및 다시 하도급 원칙적 금지 명시여부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여부(가감조정된 경우 가감조정된 기준)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 제출 명시여부 하도급비율 10%초과시 공동수급체 구성 명시여부
★ 5	SW사업 작업장소 (원격개발)	· 법 제49조 제3항 · SWA업 계약 및 관리점독에 관한 지침 제14조 · (계약예규) 용역계약일 반조건 제52조 ·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 지침 제41조	· SW시업수행을 위한 작업장소 협의결정 명시 여부 · 작업장소비용의 사업예산 계상여부 · 작업장소에 관한 보안요건 명시여부 및 계약상대자에 의한 작업장소 제시와 우선 검토 절차 명시 여부
* 6	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	국유재산법 제65조의12 법 제59조 시행령 제54조 SW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32조 (계약예규) 용역계약일반 조건 제56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・운영 지침 제60조	·지식재산권 공동소유 원칙 명시여부 ·국방·국가안보 등 이유로 발주기관 귀속 시 그 사유를 명시하였는지 여부 ·누출금지정보 등 보안관련 사항 및 계약 목적물의 반출 절차 등의 명시 여부

13	- E	104	0
7	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	· 국유재산법 제65조의12 · (계약예규) 용역계약일반 조건 제56조	·개발SW가 타 기관에 공동활용 되는지 사전에 안내하고, 공동활용 시 타 기관을 명시하였는지 여부
* 8	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	・법 제60조 ・(계약예규) 용역계약일반 조건 제58조	· 검수후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부터 1년 이내로 하자담보책임기간 명시여부 · 적법한 하자담보책임의 범위내 명시여부 (범위를 넘은 사항은 유지관리에 해당) · 하자보수와 혼용하여 '무상유지보수' 사용여부 ·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유지보수 사항 (범위내)을 하자보수로 명시하는지 여부
9	특정규격 명시 금지	· (계약예규)정부입찰·계 약집행기준 제5조 제4항 제5호	·특정상표 또는 모델·규격 등 명시여부
* 10	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(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 적용)	· 법 제49조제1항 · 시행령 제44조 제1항 · 국기계약법 시행령 제43조, 제43조의 ·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, 제44조의 · (계약예규)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· (계약예규)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	· SW사업에 대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채택 여부 ·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방식 채택 여부
11	기술능력평가비중 (90%) 도입	· (계약예규)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/조 ·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 지침 제18조	· 협상방식 적용사업에서 기술능력 대 가격 점수 비중을 90:10로 제시여부
★12	SW기술성평가기준 적용	・법 제49조 제2항 ・SW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	·기술능력평가 시 평가기준을 SW기술성 평가기준을 적용·활용하였는지 여부 ·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를 30점 이하로 준수하였는지 여부 ·차등점수제 도입 시 입찰공고문, 제안요 청서에 명시 여부
★13	SW사업 제안서 보상	· 법 제52조 · SWA업 계약 및 관리목에 관한 지침 제8조, 제16조, 제17조	· 20억원 이상의 SW 개발사업에서 제안서 보상에 대한 명시 여부
★14	요구사항 상세화	· 법 제44조 · SWA업 계약 및 관리목에 관한 지침 제11조	·SW사업의 상세요구사항 작성표 사용여부
★15	SW사업 적정사업기간 산정	· 법 45조 · SWA업 계약 및 관리독에 관한 지침 제10조	· SW개발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 적정사업기간 산정기준에 따른 사업 명시 및 종합 산정서 첨부 여부
★16	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	· SW시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1조제3항, 제18조제3항	· SW개발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 제안요청서 내 투입인력 관련 사항 명시 불가능
★ 17	SW사업 영향평가	 법 제43조 시행령 제35조, 제36조, 제37조 SW시업 계약 및 관리감독 에 관한 지침 제5조, 제6조 	·SW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첨부 여부
★18	SW사업정보제출	· 법 제46조	· SW개발·재개발·유지보수 및 운영과 관 련된 사업의 경우 제안요청서 내 SW사업 정보 제출 명시 여부

【부록 3】

정보보안 기본지침

- **제14조(제안요청서 기재사항)** ①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의 장은 용역업체에 정보화사업을 발주하기 위하여 제안요청서를 작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 - 1. 용역업체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요구사항
 - 2. 온라인 개발 또는 온라인 유지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, 제29조의2 또는 제52조에 따른 보안대책<개정 2021.2.25>
 - 3. 누출금지정보 목록
 - 4. 용역업체가 누출금지정보를 제외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발주자의 승인절차
 -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누출금지정보 목록을 작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 - 1. 정보시스템 내·외부 IP주소 현황
 - 2.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
 - 3. 개별사용자의 계정 ·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
 - 4.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 · 평가 결과물
 - 5.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(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)
 - 6.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・운용 현황
 - 7.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
 - 8.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
 - 9. 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
 - 10. 「보안업무규칙」제26조에 따른 비밀 및 제30조에 따른 대외비
 - 11. 그 밖에 보안담당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